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24호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예정에 따른 운영 및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안 제14조(유지관리비의 부담) 제2항 관련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중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시 각 처리시설 별 가동률에 따라 적용 요율을 신설, 증설 공사비 적용 유예 등 배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목록에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추가)(안 제3조)
-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산출 시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신설, 증설 공사비 적용 유예 등 적립금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3. 9.(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산업 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 -8765, 이메일 iamng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안 제14조 제2항 관련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에서 1. 산출공식 (1), (나)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시설재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text{시설재투자적립금 (E)} = E_i \times F_i \times R \times C_i$$

1) E_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된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F_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 $2/1,000$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4) C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효율

$$- \text{처리시설 가동률}(\%) = \frac{\text{전월평균오·폐수발생량}}{\text{적립금 적용 처리시설 용량}} \times 100$$

- 적립금 적용 효율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효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60초과~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 초과
적립금 적용 효율	0	0.2	0.4	0.6	8.0	1.0

※단,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이하인 경우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효율을 조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① (생략)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신설)	3. I-Food Park 일반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별표 2] 유지관리비산출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2] 유지관리비산출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_i \times F_i \times R$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_i \times F_i \times R \times C_i$
1) E_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1) E_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생략)	- (현행과 같음)
- (신설)	- <u>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u>신설</u>)	4) <u>C_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u>

현	행	개	정	안																								
		- <u>처리시설 가동률(%)</u> = $\frac{\text{전월평균오·폐수발생량}}{\text{적립금 적용 처리시설용량}} \times 100$ - <u>적립금 적용 효율</u> <table><tr><th>구</th><th>분</th><th colspan="6">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효율</th></tr><tr><td>처리시설 가동률(%)</td><td></td><td>0 ~ 20 이하</td><td>20초과~ 40 이하</td><td>40초과 ~ 60 이하</td><td>60초과 ~ 80이하</td><td>80초과 ~90이하</td><td>90 초과</td></tr><tr><td>적립금 적용 효율</td><td></td><td>0</td><td>0.2</td><td>0.4</td><td>0.6</td><td>0.8</td><td>1.0</td></tr></table> ※단,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 이 50%이하인 경우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효율을 조정 할 수 있다.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효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40 이하	40초과 ~ 60 이하	60초과 ~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 초과	적립금 적용 효율		0	0.2	0.4	0.6	0.8	1.0
구	분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효율																										
처리시설 가동률(%)		0 ~ 20 이하	20초과~ 40 이하	40초과 ~ 60 이하	60초과 ~ 80이하	80초과 ~90이하	90 초과																					
적립금 적용 효율		0	0.2	0.4	0.6	0.8	1.0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물환경보전법

-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부담금은 100% 원인자가 부담하는 사항으로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환경녹지국 수질환경과장 유 훈 수